

의안번호	2204406
의 퇴 인	권향엽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.
추계번호	24D4114
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기간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을 각각 연장하고,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와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해 홍보하게 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8억 4,700만원, 2030년 16억 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251억 8,000만원(연평균 41억 9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진상규명조사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 (안 제7조 및 제9조)	2,369	5,185	5,108	4,265	4,155	1,080	22,162	3,693
위원회 홍보사업 (안 제13조제2항 신설)	478	488	498	508	518	528	3,018	503
추가재정소요	2,847	5,673	5,606	4,773	4,673	1,608	25,180	4,196

주: 본 추계 결과는 기존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) 및 제9조(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)	-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(안 제7조제1항) -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을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(안 제9조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13조(위령 및 홍보사업) 제2항 신설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제15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의 홍보를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수집 및 분석)제1항 및 제9조(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)제1항	○	-
2	안 제13조(위령 및 홍보사업)제2항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안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으로 진상규명 조사기간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을 각각 연장함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비용, 진상규명 조사비용,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비용을 추계¹⁾함

- 진상규명조사 개시일 : 2022.10.6.
- 진상규명 조사기간
: (현행) 2022.10.6. ~ 2024.10.5.(2년) → (개정안)2022.10.6. ~ 2027.10.5.(5년)
-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
: (현행) 2024.10.6 ~ 2025.4.5.(6개월) → (개정안)2027.10.6. ~ 2029.10.5.(2년)
-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²⁾: (현행) 2025.10.5.→ 2030.4.5.

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비용, 진상규명 조사비용, 진상보고서 작성비용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준용함

○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비³⁾는 28억 5,900만원임

1) 진상규명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유족·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가 늘어나 손실보상금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는 개정안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추계에서 제외함

2) 현행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진상보고서 작성 완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만료됨

3) 세부사업 여수순천 10·19위원회 지원(2437-300)사업(2024년 예산안 53억 6,500만원)에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운영비(2억 6,400만원)와 사실조사단 운영비(21억 600만원), 유족에 대한 손실보상금(1

-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위촉위원 수당, 전문임기제 등의 인건비, 연구용역비 등을 포함함
- 진상규명 조사비용은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실조사단 운영비용(21억 600만원)을 준용함
 - 진상규명 및 희생자·유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담당하는 사실조사단을 구성·운영하고 있으며,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, 교육비, 공공요금, 임차료 등을 포함함
-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비용은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비용(2억 6,400만원)을 준용함
 - 현행법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이 2024년 10월~2025년 4월이므로, 2024년 예산에는 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만 반영되어 있음
 -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운영에 따른 전문임기제 등 인건비 등을 포함함
- 안 제13조제2항 신설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와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의 홍보를 위한 비용은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24년도 위원회 대외홍보 사업 예산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⁴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과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로 6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안 제7조(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수집 및 분석) 및 제9조(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)

- (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비용)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비용을 준용하면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38억 9,000만원으로 추계됨

억 3,600만원)을 제외함
4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년 7월 기준, 단위: %)							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6	2.2	2.2	2.1	2.1	2.1	2.0

-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2030년 4월까지이며,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비용(28억 5,900만원)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 - 위원회 및 위촉위원의 임기 종료 시점까지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며, (현행) 2025.10.5.에서 (개정안) 2030.4.5.까지 4년 6개월 연장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비용 추가재정소요: 2025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비용	487	2,986	3,049	3,113	3,175	1,080	13,890

주: 1.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기간(법률 시행일~2025.10.5.)과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기간(법률 시행일~2030.4.5.)를 고려하여 2025년은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고, 2030년은 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함
 2.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진상규명 조사비용)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실조사단 운영비용을 준용하면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2억 2,2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사실조사단 운영비용(21억 600만원)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 - 진상규명조사 기간은 개정안에 따라 3년 연장됨
 - : (현행) 2022.10.6. ~ 2024.10.5.(2년) → (개정안) 2022.10.6. ~ 2027.10.5.(5년)
 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추계기간이 2025년부터이므로, 개정안에 따라 2024년(2024.10.6.~12.31.)에 필요한 비용⁵⁾은 추계에서 제외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비용 추가재정소요: 2025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진상규명 조사비용	2,152	2,199	1,871	0	0	0	6,222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5) 351백만원

□ (진상조사보고서 작성비용)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비용을 준용하면, 2024년부터 2030년까지 20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○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비용(2억 6,400만원)의 1개월당 운영비용(8,800만원)을 준용하고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
－ 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

：(현행) 2024.10.6 ~ 2025.4.5.(6개월) → (개정안)2027.10.6. ~ 2029.10.5.(2년)

－ 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비용과 현행법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비용의 차액을 계산하여 추계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비용 추가재정소요: 2025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비용(A)	0	0	188	1,152	980	0	2,320
현행법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비용(B)	270	0	0	0	0	0	270
추가재정소요(A-B)	△270	0	188	1,152	980	0	2,050

주: 1. 현행법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은 2024.10.6 ~ 2025.4.5.이므로, 2024년에 필요한 비용은 2024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있어 추계에서 제외하고 2025년에 추가 반영될 예산만 고려함
2. 개정안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은 2027.10.6. ~ 2029.10.5.이므로, 2027년은 2개월간, 2029년은 10개월간의 비용을 반영함
3.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개정안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기간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을 각각 연장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3억 6,900만원 등 총 221억 6,2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진상규명 조사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비	487	2,986	3,049	3,113	3,175	1,080	13,890
진상규명 조사비용	2,152	2,199	1,871	0	0	0	6,222
진상조사보고서 작성비용	△270	0	188	1,152	980	0	2,050
합 계	2,369	5,185	5,108	4,265	4,155	1,080	22,162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안 제13조(위령 및 홍보사업)제2항 신설

-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와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의 홍보를 위한 비용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1,800만원으로 추계
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화위운영(1031-300) 사업 중 위원회 활동 홍보, 진실규명 결정 등 성과홍보, 홈페이지·SNS 등 운영을 위해 2024년도에 편성된 4억 6,800만원을 준용하고,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위원회 홍보사업 비용을 추계

[표 6] 위원회 홍보사업 비용 추가재정소요: 2025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위원회 홍보사업	478	488	498	508	518	528	3,018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 결과, 개정안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기간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을 각각 연장하고,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활성화와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해 홍보하게 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8억 4,700만원, 2030년 16억 800만원 등 총 251억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진상규명 조사기간 및 진상보고서 작성기간 연장	2,369	5,185	5,108	4,265	4,155	1,080	22,162
위원회 홍보사업	478	488	498	508	518	528	3,018
합 계	2,847	5,673	5,606	4,773	4,673	1,608	25,180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기존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